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 768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
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
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추심업체의 과도한 초본 발급으로 인해 일반 민원인들의 제증명 발급
지연 등 문제점 제기로 구청에서만 이해관계인 초본을 발급하여 주민에
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권한의 위임(안 제2조 제6호)

-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채권·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(주민등록표
초본에 한정한다)